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4. 9. 2)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1.29)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4조)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0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함(안 제5조)

0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안 제7조)

0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안 제89조·제11조)

0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위촉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0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주민 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되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0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형식은 본칙 16개조문과 부칙으로 정렬되었음.

<주요 내용>

0 안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

0 안 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 결정사항을 6개 사항으로 구분하였음.

0 안 제5조에는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안 제3조에서 정하는 외국인) 총수의 14분의 1로 정하였음.

0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서명요청 방식, 서명요청 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요령,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열람에 관한 사항과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두도록 규정하였음.

0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 부의장은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심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0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1월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4년7월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3.12.3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세 이상 주민수는 약 296,000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21,143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해야만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산정은 주민투표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 20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안 제5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발의가 어려워 주민투표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안 제4조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도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주민투표 금지대상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타당하다는 일부의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의 입장과 배부해 드린 타 자치단체의 제정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기타 동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서명 요청기간 90일 이내에 투표청구 주민 21,000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0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가능하다고 생각됨.

0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민간인의 자격 요건은?

0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조례(안) 제12조에 있음.

0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주민 투표시 국비 등을 지원 받는가?

0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전액 구비로 해야됨.

0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투표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 하려는 이유는?

0 답변요지(김종선 주민자치과장) : 기본적으로는 마포구 전체를 하고 특정 동만 시행을 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의회의 의결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1.29)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이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음 (안 제3조)

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안 제4조)

-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함(안 제5조)

라.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

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안 제7조)

마.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안 제8조·제11조)

바. 구청장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되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안 제14조)

3. 제정근거

-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6조, 제13조의2
- (2)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주민투표사유 발생시 예비비로 총당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04. 6. 30 ~ 7. 20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4.8.16)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주민등록번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마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